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 폐, 췌장 ----------.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식대상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나. ----------.
1) 1순위: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장기등이식대기자(이하 이표에서 "이식대기자"라 한다)	1) 1순위: ----------
<신 설>	2) 2순위: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전국의 신장 이식대기자. 다만,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19세 미만의 신장 이식대상자 1명 우선 선정
2) 2순위: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	3) 3순위: ---------- 1명. 다만, 2)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외
3) 3순위: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2)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	4) 4순위: ----------3)----------
4) 4순위: 다음의 권역 구분에 따라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이식대기자	5) 5순위: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5) 5순위: 4)의 권역 구분에 따라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는 이식대기자	6) 6순위: 5)----------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장기별 기준	2. 장기별 기준
가. 신장 및 췌장	가. 신장 및 췌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1)에서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10) -------- 19세 미만---- 19세 미만---------- --- 선정하며, 8)에도 불구하고 신장 및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에 우선한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다장기 동시 이식	사. 다장기 동시 이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식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타장기(간장, 심장, 폐, 신장 등)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 선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2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및 이식대기자 현황

□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현황

구분	뇌사자 (명)	이식건수								
		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안구
2011	368	1,548	680	313	43	98	35	3	2	374
2012	409	1,751	768	363	34	107	37	3	1	438
2013	416	1,743	750	367	57	127	46	3	4	389
2014	446	1,827	808	404	55	118	55	0	5	382
2015	501	2,003	901	456	57	145	64	4	1	375
2016	573	2,319	1,059	508	74	156	89	2	0	431
2017	**515**	1,921	**903**	**450**	62	**184**	**93**	1	0	242

□ 장기이식대기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계	장기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2011	21,861	16,764	10,964	4,895	532	257	88	18	10
2012	22,695	19,243	12,463	5,671	603	343	123	23	17
2013	26,036	21,901	14,181	6,334	715	433	194	23	21
2014	24,607	20,151	14,477	4,422	766	342	99	25	20
2015	27,444	22,241	16,011	4,774	890	400	120	28	18
2016	30,286	24,611	17,959	4,969	1,082	431	119	32	19
2017	34,187	27,701	20,283	5,411	1,210	577	**168**	33	19

3 소아 신장 이식 관련 주요 통계 및 현황

□ 2015~2017년 소아 뇌사기증 및 장기이식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

구 분	연 도	전 체	연령 구간별 분포(비율)		
			~ 11세미만	~ 17세미만	~ 19세미만
뇌사기증자	2015	501	16(3.2)	27(5.4)	33(6.6)
	2016	573	23(4.0)	31(5.4)	37(6.5)
	2017	515	17(3.3)	26(5.0)	31(6.0)
	소 계	**1,589(100.0)**	**56(3.5)**	**84(5.3)**	**101(6.4)**
신장 이식대기자 (누계)	2015	16,011	31(0.2)	-	94(0.6)
	2016	**18,912**	**27(0.1)**	**64(0.3)**	**93(0.5)**
	2017	**19,876(100.0)**	**26(0.1)**	**59(0.3)**	**92(0.5)**
신장이식자 (뇌사)	2015	901	4(0.4)	7(0.8)	11(1.2)
	2016	1,059	7(0.7)	8(0.8)	8(0.8)
	2017	903	9(1.0)	11(1.2)	12(1.3)
	소 계	**2,863(100.0)**	**20(0.7)**	**26(0.9)**	**31(1.1)**
신장이식자 (생존)	2015	990	9(0.9)	21(2.1)	28(2.8)
	2016	1,177	15(1.3)	21(1.8)	30(2.5)
	2017	1,260	11(0.9)	19(1.5)	26(2.1)
	소 계	**3,427(100.0)**	**35(1.0)**	**61(1.8)**	**84(2.5)**

□ 신장이식 대기기간

(2017년 12월 31일 기준)

연 령	이식자(뇌사)		이식대기자	
	평균대기일수	평균대기개월수	평균대기일수	평균대기개월수
~ 11세 미만	587일	19.6개월	687일	22.9개월
~ 19세 미만	1,075일	35.8개월	889일	29.6개월
19 ~ 35세 미만	2,112일	70.4개월	1,359일	45.3개월
19세 이상 ~	1,918일	63.9개월	1,585일	52.8개월
전 체	1,907일	63.6개월	1,582일	52.7개월

□ 최근 3년간 소아 뇌사기증에 따른 다장기 장기이식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건수)

구 분	기증자			다장기 이식자			
	~11세미만	11~17세미만	18~19세미만	~11세미만	~17세미만	~19세미만	19세이상
2015년	2	1	2	-	-	-	5
2016년	1	1	1	-	-	-	3
2017년	1	-	3	-	-	-	4
합 계	4	2	6	-	-	-	12

□ 국가별 소아 신장이식 제도

국 가	기 준	소아 신장이식 제도
US	18세	• 35세미만 donor는 소아대기자에게 우선권(Share35) • 좋은 예후 기대되는 신장(LOW KDPI score)은 좋은 예후인자 가진 대기자(소아, EPTS 높은 대기자)에게 우선 (단 0 mismatch, High PRA, prior living donor 없을때)
UK	18세	• 50세미만 donor 발생시 소아대기자와 HLA matching이 잘되는 경우 가산점* * no DR mismatch and 1 A or B mismatch • 투석중이면 18세 이상도 가산점 인정
Spain	15세	• 소아 donor 있을 때 우선 분배(national) • 40미만 donor는 소아 우선분배(regional, 일부지역)
France	18세	• 소아 donor 있을 때 우선 분배(national) • 30미만 donor 있을 때 우선분배(regional) • 투석중이면 18세 이상도 우선순위 유지

□ 법령별 청소년 연령기준

구분	대상연령	관련 법	내 용
아동	18세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아동복지 보장
소년	20세미만의 자	소년법 제2조	반사회성 있는 소년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 특별조치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에 대한 책임 규정
	만 19세미만의 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성년	만 19세이상	민법 제4조	완전한 행위 능력
연소자	18세미만의 자	헌법 제32조제5항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관계에서 연소자 근로 특별보호
형사미성년자	12세이상 14세 미만의 자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32조	보호처분
	14세 미만의 자	형법 제9조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
혼인연령	만 18세이상~19세미만(부모동의) 만 19세이상	민법 제807조, 제808조	법률상 혼인가능연령
유언연령	만 17세이상	민법 제1061조	유언능력이 있는 연령
근로최저연령	만 15세이상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할 수 있는 연령